

우리나라의 租稅負擔에 관한 考察

——所得階層別 國內消費稅의 負擔——

車 輦 權

目 次

序 言

I. 所得階層別 租稅負擔計測에 있어서의 制約條件과 接近方法

1. 制約條件
2. 接近方法

II. 所得階層別 家計收支와 課稅物品 및 課稅對象서비스에 대한 支出類型

1. 所得階層別 家計收支
2. 課稅對象物品 및 서비스에 대한 家計의 支出

III.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負擔

1. 所得階層別 物品稅의 負擔
2. 所得階層別 酒稅의 負擔
3.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の 負擔

IV. 內國消費稅의 負擔水準

1.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總體的 負擔과 稅種의 構成
2.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總體的 負擔率
3. 外國의 事例

結 語

序 言

『韓國의 經濟開發을 위한 歲入政策』이라는 標題로 불리워 지고 있는 이론바 「머스그레이브 報告書」에서 「R. A. 머스그레이브」博士는 所得稅가 奢侈品에 重課하는 物品稅에 의하여 補完되어야 한다는 主張과 함께 “物品稅는 널리 信奉되고 있는 바와는 反對로 반드시 不公平한 것은 아니다. 이와는 反對로 오히려 適切한 稅率構造를 適用한다면 韓國의 稅制에 있어서 課稅上的 公平을 改善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 될 것”⁽¹⁾이라는 見解를 피력한바 있다.

(1) R. A. Musgrave, *Revenue Policy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財務部司稅局, 1965, p. 12.

오늘날 開發途上에 있는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社會 및 經濟開發에 所要되는 莫大한 財源을 合理的으로 또 効率的으로 調達하여야 할 共通의인 課題에 直面하고 있다. 그리하여 租稅政策의 基本目標은 當然히 最大의 稅收를 確保하는데 設定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로 課稅技術上的 理由때문에 所得 및 富에 대한 課稅보다 支出에 대한 課稅에의 依存度を 높이는 一般的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支出에 대한 課稅는 綜合消費稅 (expenditure tax)를 除外하면 그 負擔이 所得에 대하여 逆進的이라는 要望되지 않는 經濟的 作用을 수반한다. 따라서 租稅收入中 支出에 대한 課稅에 따른 稅收의 比重이 커질수록 租稅負擔의 公平化에 관한 問題가 社會的으로 나 또 經濟的으로 重要的 意義를 갖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既存資料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內國稅中 物品稅 酒稅와 煙草專賣益金의 所得階層別 負擔水準을 살펴 보고 그 累進性 또는 逆進性을 밝힌 다음 選擇된 支出課稅의 所得階層別 負擔과 直接稅의 階層別 負擔을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I. 所得階層別 租稅負擔 計測에 있어서의 制約條件과 接近方法

1. 制約條件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을 計測함에 있어서는 家計調查資料를 利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家計調查資料를 基礎로 하여 階層別 租稅負擔을 推定할 경우에는 恒常 다음과 같은 制約條件이 뒤따르기 마련이다.⁽²⁾

첫째는 標本誤差나 調査上の 誤差를 除外하더라도 家計收支의 調査單位가 家計라는 集團이기 때문에 集團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家計支出은 比較的 正確하게 調査될 수 있으나 個人이 課稅單位가 되어 있는 特定한 支出課稅의 負擔額을 推定하기 위한 正確한 支出額을 調査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 家計의 支出中 不規則의 支出의 規模가 크거나 그 頻도가 높을수록 計測된 階層別 間接稅負擔의 階層間 誤差는 커질 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家計調查資料에 의거하여 計測된 家計의 收支는 家口當 平均額이므로 同一한 階層內에 속하는 家口라 할지라도 支出類型의 差異에 따라 實質的 租稅負擔額은 높이 評價되거나 또는 낮게 評價될 可能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家計收支資料를 基礎로 하여 階層別 租稅負擔을 計測할 경우에는 家計가 負擔하는 稅額이 課稅物品에 대한 家計의 支出額에 比例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즉 間接稅의 負擔은 全的으로 消費者에게 歸着되는 것으로 前提하는 것이다. 또 家計는 租稅負擔으로 인하여 消費類型을 變化시키지 않고 貨幣的 錯覺에 支配되지 않는 것으로 假定하여⁽³⁾ 階層

(2) Ursula K. Hicks, *Public Finances*, 2nd ed., 1954, pp. 255—56, p. 261.

(3) R. A. Musgrave, "Effects of Tax Policy on Private Capital Formation," *Fiscal and Debt Management Policy*, the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 1936, pp. 63—4.

別 租稅負擔의 差異를 擴大시킬 수 있는 不規則의 要因을 排除하게 된다.

家計調査資料를 基礎로 하는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의 計測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一般的 制約條件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밖에 家計의 所得資料는 一般的으로 下向偏倚를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家計調査에 있어서와 같이 勤勞者家口에 限하여 調査되고 있는 家計의 收入을 全都市家口에 擴大시킬 경우 勤勞者以外家口의 家計收入은 相對的으로 低評價되는 傾向이 있고 그 租稅負擔은 높이 評價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添言하여 둔다.

2. 接近方法

家計調査資料를 基礎로 하여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을 計測하는 方法에는 徵收된 稅目別 稅額을 階層別 所得 및 支出類型에 따라 配分하여 그 階層別 負擔水準을 推定하는 接近法과 家計의 階層別 收支資料에서 直接 間接으로 稅額을 推定하여 그 階層別 負擔水準을 計測하는 接近法이 있다. 그러나 어느 方法을 利用하든 間에 家計가 負擔하는 租稅額은 家計의 所得과 支出에 比例한다고 본다.

1964 年에 「필리핀」의 「立法府 및 行政府 合同稅制委員會」가 實施한 『필리핀의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에 관한 調査』에서 利用한 接近法은 前者에 該當하며 그 內容을 좀더 자세히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⁴⁾

첫째 所得 및 富에 대한 課稅의 負擔은 家計의 所得 및 財産所有와 直接的인 相關關係를 갖고 있고 支出課稅의 負擔은 家計가 購入한 課稅物品 및 課稅對象 서비스의 價値에 거의 比例한다고 前提하였다.

둘째 稅目別로 一定한 配分基準을 定하고 當該 稅目の 徵收額을 家計의 階層別 所得水準 財産所有 및 支出總額 또는 當該 課稅物品에 대한 支出額에 따라 階層別로 配分하고 있다. 例컨대 法人所得稅의 경우 階層別 支出所得을 基準으로 하여 그 負擔額을 配分하되 法人所得稅의 33%는 全所得階層에, 그리고 67%는 最高所得階層에 配分하였으며 自動車稅의 경우에는 그 徵收額을 比較的 所得水準이 높은 階層에 限하여 配分하고 配分基準으로서는 階層別 家口數를 利用하고 있다. 한편 間接稅의 負擔配분에 있어서는 酒類稅는 階層別 酒類에 대한 支出額을 基準으로 하였고, 石油類稅中 디젤油에 대한 課稅額은 그 50%를 階層別 支出總額에 따라, 나머지 50%는 階層別 交通費(陸運)의 支出額을 基準으로 하여 各各 配分하고 있다. 또 煙草稅는 酒類稅와 같이 階層別 課稅物品에 대한 支出額에 따라 配分하고 있었으며 賣上稅는 奢侈品 準奢侈品 그리고 其他物品을 區別하여 奢侈品에 대한 賣上稅에 대해서는 階層別 奢侈品에 대한 支出額에 따라, 準奢侈品에 대해서는 階層別 家庭用 器具에 대한 支出額에 따라, 또 其他物品에 대해서는 階層別 食料品費, 住

(4) Cf. Joint Legislative-Executive Tax Commission, *A Study of Tax Burden by Income Class in the Philippines*, 1964.

居費, 被服費, 雜費 등에 따라 各各 그 負擔額을 配分하고 있다.

셋째 支出課稅의 階層別 負擔을 算出하기 위하여 利用된 方法은 다음과 같다.⁽⁵⁾

T_{ij} j 課稅物品에서 徵收한 i 稅額

t_{ijh} h 所得階層이 j 課稅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i 稅의 推定額

M_j j 課稅物品의 總市場價值

E_{jh} h 所得階層의 j 課稅物品에 대한 支出額

r_{ij} j 課稅物品에 대한 i 稅의 稅率

R_{ijh} h 所得階層에 있어서 j 課稅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i 稅의 粗所得에 대한 實效 負擔率(百分比)

R_{ij}全所得階級の 實效稅率

Y_h h 所得階層의 總所得

$Y = \sum_h Y_h$

$$\sum_h t_{ijh} = T_{ij}$$

$$\sum_h E_{jh} = E_j = M_j$$

$\frac{E_{jh}}{E_j}$ 是 j 課稅物品의 대한 全所得階級の 總家計支出에 대한 h 所得階級の 그것의 比

$$r_{ij} = \frac{T_{ij}}{M_j} = \frac{T_{ij}}{E_j}$$

$$t_{ijh} = r_{ij} E_{jh}$$

$$t_{ijh} = T_{ij} \left(\frac{E_{jh}}{E_j} \right)$$

따라서

$$R_{ijh} = (100) \frac{t_{ijh}}{Y_h}$$

$$\text{또 } R_{ij} = (100) \frac{\sum_h t_{ijh}}{\sum_h Y_h} = (100) \frac{T_{ij}}{Y}$$

以上과 같이 「필리핀」의 階層別 租稅負擔調查에 있어서는 徵收額을 各其 稅目別로 區分하여 一定한 配分基準에 따라 全所得階層 또는 一部所得階層에 配分하는 接近法을 取하였던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實施된 類似한 調查에 있어서는 家計收支資料를 利用하여 直接 租稅負擔額을 計測하는 接近法을 利用하고 있다. 즉 韓國生産性本部 生産性研究所⁽⁶⁾나 韓

(5) Joint Legislative-Executive Tax Commission, Philippines, *op. cit.*, pp. 32—3.

(6) 韓國生産性本部 生産性研究所, 『第2次5個年計劃 稅收目標達成方案에 關한 研究』, pp. 52—86 參照.

國經濟開發協會⁽⁷⁾가 우리나라의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을 計測함에 있어서 利用한 方法을 보면 兩者間에는 多少의 差異가 없지 않으나 모두 家計의 支出資料에서 直接 家計의 租稅負擔額을 稅種別로 計算하여 그 負擔率을 推定하고 있다.

이제 그 接近法을 좀더 자세히 보면 直接稅의 階層別負擔은 家計의 支出資料에서 直接 推定하되 源泉徵收된 所得稅의 稅額을 감안하여 그 實效負擔率을 計測하기도 하였다. 한편 間接稅의 階層別負擔推定에 있어서는 通行稅 入場稅 酒稅 電氣·가스稅 物品稅 煙草專賣益金등 選擇된 主要 稅種에 限하여 稅種別로 家計의 支出資料를 利用하여 當該 稅種의 階層別 負擔額을 推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直接稅의 負擔은 家計의 支出資料에서 또 間接稅의 負擔은 家計의 課稅物品 또는 課稅對象 서비스에 대한 支出에 當該 稅率을 適用하여 推定하는 方法을 利用하고 있으나 家計調査資料에 나타난 對象別 支出額은 間接稅가 包含된 金額이기 때문에 生産性研究所에서는 다음과 같은 算定方法을 利用하고 있다.⁽⁸⁾

T間接稅

P物品價格

r稅率

P'支出額商品의 購入額

$$P' = P + T$$

$$P' = P + Pr \quad (\because T = P \cdot r)$$

따라서 $P(1+r) = P'$

$$P = \frac{P'}{1+r}$$

$$T = Pr = \frac{P'r}{1+r}$$

그런데 家計의 支出額 (P')에는 間接稅만이 아니라 流通費用도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 提示한 方法에 따르면 그 負擔은 높이 評價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勘案하여 韓國經濟開發協會의 階層別 內國消費稅負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算定方式을 利用하고 있다.⁽⁹⁾

$E_{ijk} \cdots h$ 所得階層의 i 消費稅를 包含한 j 物品에 대한 支出額

$P_{ijk} \cdots h$ 所得階層의 j 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製造場 販賣價格 (i 消費稅 包含)

$R_j \cdots j$ 物品의 流通費用

(7) 韓國經濟開發協會, 『內國消費稅에 關한 研究報告書』, pp. 161—205 參照.

(8) 生産性研究所, 上掲書, p. 72.

(9) 韓國經濟開發協會, 上掲書, p. 167.

$P'_{jh} \cdots h$ 所得階層이 j 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課稅前價格

$t_{ijh} \cdots h$ 所得階層이 j 課稅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i 消費稅額

$r_{ij} \cdots j$ 物品에 대한 i 消費稅의 稅率

$R_{ijh} \cdots h$ 所得階層이 j 課稅物品에 대하여 支拂한 i 消費稅의 實效稅率

$Y_h \cdots h$ 所得階層의 所得額

$$E_{ijh} = P_{ijh} + R_j$$

$$\text{但 } P_{ijh} = P'_{jh} + t_{ijh}$$

$$E_{ijh} = P'_{jh} + t_{ijh} + R_j$$

$$\text{但 } r_{ij} \cdot P'_{jh} = t_{ijh}$$

$$E_{ijh} = \frac{t_{ijh}}{r_{ij}} + t_{ijh} + R_j$$

$$\text{따라서 } t_{ijh} = \frac{r_{ij}}{1+r_{ji}} (E_{ijh} - R_j)$$

$$\text{또 } R_{ijh} = (100) \frac{t_{ijh}}{Y_h}$$

그리하여 韓國經濟開發協會가 利用한 方法은 間接稅의 階層別 負擔을 推定함에 있어서 稅種別로 보면 正確性을 더 높일 수 있는 方法이기는 하나 調査된 流通마진의 上·下後偏倚 또는 階層別 支出類型의 差異가 計測된 負擔率의 誤差를 擴大시킬 可能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生産性研究所나 韓國經濟開發協會의 階層別 租稅負擔 計測은 모두 그 接近法에 있어서 家計調査資料에서 稅額을 推定하는 部分的인 負擔構造를 나타내고 있는 制約條件을 갖고 있는 것이다.

II. 所得階層別 家計收支와 課稅物品 및

課稅對象서비스에 대한 支出類型

1. 所得階層別 家計收支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實施하고 있는 家計調査는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全國 30 個 都市에 分布되어 있는 全家口中에서 層化三段抽出法에 의하여 任意抽出한 1,720 家口(1965 年度)를 標本으로 하여 勤勞者家口에 대해서는 收入과 支出을, 勤勞者以外家口에 대해서는 支出만을 調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勤勞者家口를 中心으로 하여 그 收支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5 年度 全都市 勤勞者家口의 家口當 月平均所得은 8,448 원이었으나 이를 所得階層別로 보면 第1分位階層은 1,652 원, 第10分位階層은 34,729 원에 各各 達하고 있다.

한편 階層別 家計收支의 過不足을 보면 勤勞者家口 全階層의 平均收支過不足은 178 원에 不過하지만 月平均所得이 8千~10千원인 第5分位階層에 있어서도 397 원의 家計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또 그 消費支出를 보면 全階層 平均額은 8,330 원으로서 全階層 平均所得額 8,448 원을 下廻하고 있으나 第5分階層까지의 所得階層에 있어서는 家口當 月平均 消費支出額이 그 所得額을 上廻하고 있다.

<第1表> 現金所得階層別 勤勞者家口 所得階層別 月平均 家計收支(1965) 單位: 원

區分 所得階層別		家 口 數	所 得(A)	費用支出(B)	消 費 支 出	收支過不足 (A-B)
勤勞者家口全階層		998	8,448	8,626	8,330	-178
I	2,000未滿	6	1,652	2,010	1,990	-358
II	2,000~4,000	108	3,209	3,433	3,400	-224
III	4,000~6,000	239	4,922	5,312	5,230	-390
IV	6,000~8,000	214	6,816	7,181	6,990	-365
V	8,000~10,000	141	8,784	9,181	8,830	-397
VI	10,000~12,000	104	10,730	10,889	10,470	-159
VII	12,000~14,000	68	12,652	12,552	12,020	+100
VIII	14,000~20,000	78	15,654	15,333	14,724	+321
IX	20,000~30,000	34	22,377	21,601	20,835	+776
X	30,000以上	6	34,729	33,309	31,617	+917

資料: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家計調查(1965)

註: 月平均所得 14,000원 以上の 階層은 韓國經濟開發協會가 1965年 第4/4分期에 限하여 別途調査한 것임.

다음에 階層別 費目別 支出構成을 보면 所得水準이 높아질수록 家計의 消費支出中에서 食料品費가 占하는 比重은 低下되고 있으나 食料品費中 穀物에 대한 支出比重은 그보다 더 빠른 템포로 低下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穀物以外的 食料品, 이를테면, 肉魚介類 乳 卵을 위시하여 調味料 清涼飲料 加工食品 등에 대한 家計의 支出이 增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住居費의 比重도 家計所得의 上昇과 相反되는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으나 이는 住居費中에 包含되고 있는 支出방식 및 방식의 比重이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漸次 低下되고 있는데 基因하나 그 反面에 住宅修理 및 家具什器에 대한 家計支出은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增加하고 있다.

한편 電氣料 燃料費등으로 構成되는 光熱費의 比重은 階層別로 볼 때 큰 差異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被服費 및 雜費의 比重은 所得水準의 上昇과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 더우기 그러한 變化는 被服費中 裝身具에 대한 支出이나 雜費中 美容 衛生用品에

〈第2表〉

現金所得階層別 費目別 支出構成(全都市) (1965)

單位：%

	消費支出 (圓)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
		總計	穀物	總計	집세및당세			
全階層平均	8,330	64.0	39.4	3.4	1.2	6.4	7.4	18.8
I	1,990	78.9	66.3	4.5	4.0	6.5	3.0	7.1
II	3,400	73.4	59.9	3.8	2.9	8.5	3.8	10.5
III	5,230	71.9	53.2	3.4	2.1	7.5	5.0	12.2
IV	6,990	69.1	46.2	3.2	1.6	6.6	6.2	14.9
V	8,830	65.2	41.3	3.3	0.9	6.3	7.2	18.0
VI	10,470	63.4	36.2	2.5	0.8	6.0	7.7	20.4
VII	12,020	61.0	32.7	2.7	0.3	6.1	7.9	22.3
VIII IX X	17,210	54.1	25.2	2.8	1.0	5.4	10.2	26.5

資料：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대한 支出 娛樂費 서비스料등의 增加에 基因하고 있는 것이며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對象別로 보면 支出의 多樣化가 이루어 지고 있는 一般의 傾向을 지적하여 볼 수 있다.

2. 課稅對象物品 및 서비스에 대한 家計의 支出

家計의 消費支出中 物品稅 課稅品目의 一部와 酒稅 및 煙草消費稅 課稅品目에 대한 家計의 支出과 그리고 通行稅 및 入場稅 課稅對象서비스와 電氣·가스稅 課稅品目에 대한 家計의 支出을 各各 區分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家計支出項目中에 包含되어 있는 物品稅 課稅品目 (21 個)과 酒類 煙草에 대한 家計支出의 相對的 比重을 보면 全階層平均에 있어서 物品稅 課稅品目에 대한 支出은 家口當 消費支出의 0.92%, 酒類에 대한 支出은 0.40% 그리고 煙草에 대한 支出은 4.57%를 各各 占하고 있으며 煙草에 대한 支出의 比重이 가장 높다.

또 이를 課稅對象別 所得階層別로 보면 物品稅 課稅物品에 대한 家計支出의 比重은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酒類에 대한 家計支出에 있어서도 거의 類似한 傾向을 찾아 볼 수 있으나 煙草에 대한 家計支出에 있어서는 相反된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總體의으로는 煙草에 대한 家計支出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家計의 消費支出中에서 物品稅 酒稅 煙草稅 課稅品目에 대한 支出이 占하는 比重은 家計의 所得

〈第3表〉 所得階層別(全家口) 消費支出額에 대한 物品稅課稅物品·酒類·煙草消費額의 比重

(1965)

單位：%

階層別 區分	全階層 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消費支出(圓)	8,330	1,990	3,400	5,230	6,990	8,830	10,470	12,020	14,724	20,835	31,617
課稅物品	0.92	0.35	0.18	0.27	0.44	0.55	0.79	0.94	0.75	1.30	1.70
酒類	0.40	—	0.15	0.27	0.31	0.39	0.31	0.41	0.40	0.53	0.31
煙草	4.57	6.98	6.21	4.59	4.08	3.98	3.62	3.79	3.82	2.84	2.69
合計	5.90	7.34	6.53	5.12	4.84	4.92	4.72	5.13	4.98	4.67	4.71

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低下되고 있다.

이와 같이 物品稅 課稅品目에 대한 家計의 支出이 所得階層別로 볼 때 上向趨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物品稅 課稅對象中에 包含되어 있는 설탕·커피·高級家具·텔레비 淸涼飲料等 物品이 높은 所得彈力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家計의 消費支出中에서 酒類에 대한 階層別 消費支出의 比重이 거의 比例的인 것이 있는 것은 家口當 酒類消費量에는 큰 差異가 없으나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高級酒類를 消費하게 되는 一般的 傾向에서 說明될 수 있을 일이다.

또 煙草에 대한 家計支出은 階層別로 볼 때 消費支出水準에 따라서 所得水準과 逆比例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家口當 煙草消費量에 큰 差異가 없고 煙草의 所得彈力性이 相對的으로 낮는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所得階層別 通行稅 入場稅 및 電氣·가스稅의 課稅對象에 대한 家計支出의 相對的 比重을 보면 通行稅의 課稅對象서비스에 대한 家計의 支出은 所得水準의 上昇과 함께 急激한 上昇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또 入場稅課稅對象에 대한 支出도 그 增加 tempo는 交通費의 增加率보다 下廻하나 第8分位階層의 比重은 第1分位階層에 比하여 5배가 높으며 위에서 살펴 본 物品稅 課稅物品이나 類酒에 대한 家計의 支出보다 그 上昇 tempo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通行稅나 入場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家計支出의 增加率이 높은 것은 이미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所得水準이 높아 질수록 家計의 消費支出構成에 있어서 雜費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는 傾向과 符合되는 現象인 것이다.

〈第4表〉 所得階層別 通行稅 入場稅 電氣·가스稅 課稅對象에 대한 家計支出

單位：%

階層別 區分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消費支出額(원)	1,990	3,400	5,230	6,990	8,830	10,470	12,020	17,210
通行稅 課稅 對象에 대한 支出	0.35	0.85	0.98	1.16	1.42	1.55	1.84	2.60
入場稅 課稅 對象에 대한 支出	0.10	0.06	0.15	0.20	0.34	0.40	0.43	0.50
電氣·가스稅 課稅 對象에 대한 支出	0.50	1.18	1.34	1.43	1.59	1.62	1.75	1.63
合 計	0.95	2.09	2.47	2.79	3.35	3.57	4.02	4.28

資料：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한편 家計가 支出한 電氣料의 相對的 比重은 所得水準의 上昇과 함께 漸次的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上昇은 通行稅나 入場稅 또는 物品稅나 酒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서비스 및

物品에 대한 支出의 增加率을 下廻하고 있으나 階層別 家計支出에 있어서의 그 比重은 煙草에 대한 支出에 이어 相對的으로 크다.

또 內國消費稅中 石油類稅를 除外한 物品稅 酒稅 煙草消費稅 課稅物品에 대한 家計消費支出과 通行稅 入場稅 및 電氣·가스稅의 課稅對象에 대한 家計의 消費支出을 比較하여 보면 低所得層일수록 家計의 消費支出中에서 前者가 占하는 比重은 높으나 後者の 比重은 낮고, 高所得層일수록 前者의 比重은 낮고 後者の 比重은 높다. 그러나 家計의 課稅對象 消費支出中에서 그 比重이 일등히 높은 煙草에 대한 消費支出을 除外하고 보면 選擇된 課稅物品 및 서비스에 대한 家計의 消費支出은 所得水準의 變化와 같은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通行稅나 入場稅 그리고 電氣·가스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家計의 支出이 所得水準의 變化와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은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보다 高級인 交通手段을 利用할 뿐만 아니라 敎養娛樂費의 支出이 增加하고 또 住居環境의 改善에 따라 光熱費도 加增되는 一般的 傾向에서 說明될 수 있는 일이다.

III.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負擔

財貨나 用役의 生産 또는 去來에 賦課되는 租稅는 生産者나 消費者에게는 費用의 一部가 되기 때문에 그 負擔은 轉嫁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不完全競爭市場條件下에 있어서 可變費用을 增加시키는 產出量 單位當 課稅는 그 負擔이 全的으로 最終消費者에게 歸着한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아니다.

物品稅나 酒稅 그리고 煙草專賣益金(煙草消費稅)은 製品을 製造場에서 搬出하거나 또는 輸入品인 경우 그 物品을 保稅區域에서 引取할 때 課稅되며 通行稅나 入場稅 또는 電氣·가스稅는 各其 當該 課稅對象 서비스를 享受할 경우에 課稅되어 그 負擔額은 課稅物品 또는 課稅對象 서비스에 대한 支拂額에 比例한다. 따라서 階層別 그 負擔額은 階層別 當該 課稅物品 또는 課稅對象 서비스에 대한 支出額을 基礎로 하여 計測하여 볼 수 있는 일이다.

1. 所得階層別 物品稅의 負擔

<階層別 物品別 物品稅負擔額>

全所得階層의 平均 物品稅負擔額은 9.14 원이지만 階層別로 보면 그 負擔은 最低所得階層인 第1分位階層의 0.37 원에서 最高所得階層인 第10分位階層의 90.85 원에 各各 達하고 있다.

이를 家計支出의 費目에 따라 區分하여 보면 食料品購入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은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 5.97 원에 達하고 있으며 그 階層別 負擔額은 第1分位階層의 0.21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38.39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를 品目別로 보면 全階層을 通하여 설탕

消費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家計의 食料品購入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을 全般的으로 높이고 있다.

〈第 5 表〉

所得階層別 物品稅 負擔額(1965)

單位 : 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全 物 品	9.14	0.37	0.70	1.36	3.45	5.59	10.48	13.25	16.54	36.79	90.85
(食 料 品 費)	5.97	0.21	0.43	0.64	2.25	3.50	6.72	8.85	13.39	21.93	38.39
설 탕	4.93	0.21	0.43	0.64	2.21	3.21	6.43	8.14	8.14	15.43	22.07
커피	1.00					0.25	0.25	0.50	5.25	6.50	15.50
콜라											
사 이 다	0.04				0.04	0.04	0.04	0.08			0.57
주 스								0.13			0.28
(住 居 費)	2.25	0.04		0.21	0.49	1.22	2.52	3.32	2.22	13.86	48.96
벽 지	0.04				0.02	0.03	0.03	0.04	0.09	0.10	0.22
창 호 지	0.02					0.02	0.02	0.03	0.04	0.09	0.13
시 멘 트	0.20	0.04		0.04	0.11	0.18	0.07	0.61	0.46	0.43	0.82
합 석	0.07				0.04	0.04	0.07	0.11		0.93	
板 유 리								0.07		0.07	0.07
合 板										0.27	0.14
양 북 장	1.56			0.17	0.17	0.87	2.08	2.25	1.38	10.55	26.87
재 봉 틀	0.11				0.04	0.04	0.04			1.42	
텔 레 비											20.71
라 디 오	0.25				0.11	0.04	0.21	0.21	0.25		
(光 熱 費)	0.07						0.20		0.13	0.47	0.34
프로판가스	0.07						0.20		0.13	0.47	0.34
(被 服 費)	0.76	0.07	0.28	0.48	0.69	0.83	0.89	0.89	0.75	0.48	3.07
廣 木	0.14			0.07	0.14	0.21	0.14	0.07	0.07	0.07	1.36
포 플 린	0.55		0.21	0.34	0.48	0.55	0.68	0.75	0.61	0.34	1.57
綿 糸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14
(雜 費)	0.08	0.06		0.03	0.04	0.06	0.16	0.20	0.04	0.05	0.10
도 화 지							0.04	0.04	0.04	0.04	0.07
更 紙	0.08	0.06		0.03	0.04	0.06	0.12	0.16		0.01	0.03

資料 :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調査資料를 再分類한 것임.

그러나 설탕을 除外한 그밖의 食料品購入에 따른 物品稅負擔을 階層別로 보면 物品에 따라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所得水準이 높아 질 수록 負擔額은 增加하고 있고 또 特定한 物品에 대해서는 特定한 階層만이 物品稅를 負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커피는 第 5 分位階層以上の 階層만이 그리고 주스는 第 7 分位階層以上の 階層만이 當該物品에 대한 物品稅를 負擔하고 있다.

한편 住居用 物品의 購入에 따라 家計가 負擔한 物品稅額은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는 2.25 원이지만 階層別로 그 負擔額을 보면 第1分位階層은 0.04 원 第10分位階層은 48.96 원으로써 그 階層間의 負擔格差가 매우 크다. 이는 所得階層間의 消費支出類型의 差異, 이를테면 住居用 物品中 一部物品에 대한 支出이 特定階層에 偏在하고 있는 데 基因하는 것이지만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階層別 物品稅負擔額은 食料品の 경우와 같이 增加하고 있는 一般의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品目別로 보면 양복장 재봉틀 시멘트 텔레비와 같은 所得彈力性이 높은 物品의 消費로 因한 物品稅負擔이 階層間의 負擔格差를 擴大시키고 있다.

다음에 光熱費中에 包含되어 있는 物品稅 課稅品目인 프로판가스 消費에 따른 階層別 物品 稅負擔을 보면 全階層 平均 負擔額은 0.07 원이지만 第6分位階層以下の 階層에 있어서는 當該 物品稅를 負擔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第6分位階層以下の 階層에 있어서는 當該 物品에 대한 消費支出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家計의 消費支出中 被服費는 食料品費에 이어 그 比重이 높으나 被服費中에 包含되어 있는 物品稅 課稅對象인 廣木 포플린 및 綿絲 3種目 物品의 消費에 따른 物品負擔額을 보면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는 0.76 원에 達하고 있으며 그 負擔水準은 住居費의 경우보다 낮다. 또 그 階層別 負擔을 보면 第1分位階層은 0.07 원, 第10分位階層은 3.07 원에 各 達하고 있으며 食料品費나 住居費의 경우보다 그 階層間 負擔格差는 심하지 않다. 그러나 그 階層別 負擔에 있어서 技術的인 것은 住居費의 경우에 比하여 低所得階層의 負擔額이 相對的으로 높고 高所得階層의 負擔額은 相對的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廣木이나 綿絲가 生活必需品으로서 全階層을 통하여 그 物品稅負擔額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基因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雜費中에 包含되어 있는 2個物品의 消費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을 보면 全階層 平均은 0.08 원이고 그 階層別 負擔은 第1分位階層의 0.06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0.10 원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階層間의 負擔格差가 가장 작다. 이는 調査對象物品이 모두 必需品이며 또 그 需要가 所得彈力的이 아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이 家計의 消費支出中에 包含되어 있는 21個 物品稅 課稅物品의 消費에 따른 階層別 負擔을 보면 廣木이나 綿絲 更紙 벽지 창호지와 같은 必需品 消費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은 階層間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탕이나 커피 양복장 텔레비 재봉틀과 같은 奢侈品 또는 準奢侈品의 消費에 따른 物品稅負擔額은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增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階層別 物品別 物品稅負擔額을 살펴 보면 食料品 및 住

居用品의 購入에 따른 物品稅負擔은 설탕을 除外하고 보면 그 大部分이 第4分位階層以上인 階層에 歸着되고 있으며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物品別 物品稅負擔은 多樣化되고 있는 事實을 지적하여 볼 수 있다.

<階層別 物品稅의 負擔率>

1965年度 全階層 家口當 平均 物品稅負擔率은 0.108%에 不過하며 이는 家計所得 1,000원中 1.08원이 物品稅로서 支拂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階層別로 보면 그 負擔率은 第1分位階層에 있어서는 0.023%,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0.262%가 되어 있으며 物品稅의 負擔은 全般的으로 累進의 性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物品稅의 負擔構造가 累進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主로 階層間에 있어서의 消費支出 類型의 差異, 이를테면 所得水準이 낮을 수록 物品稅課稅對象物品에 대한 家計의 支出水準이 낮거나 또는 그러한 物品을 消費하지 않는데 基因하는 것이지만 그밖에 物品稅課稅에 있어서 稅率表가 物品別로 差別課稅을 하는 構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제 家計가 負擔한 物品稅負擔率을 階層別 物品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食料品消費에 따른 家計의 物品稅負擔率은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 0.071%이며 全物品에 대한 家計의 負擔率의 67.7%를 占하고 있다. 또 그 階層別 負擔率을 보면 第1分位階層은 0.013%, 第10分位階層은 0.112%에 各各 達하고 있으며 그 負擔構造는 累進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品目別로 보면 설탕과 커피의 消費에 따른 階層別 物品稅의 負擔 構造는 그 累進性이 뚜렷하나 清涼飲料의 경우에는 거의 比例的인 負擔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住居用 物品의 購入에 따른 物品稅負擔率은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 0.025%이며 全物品의 消費에 따른 物品稅負擔率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 階層別 負擔率을 보면 第1分位階層은 0.002%, 第10分位階層은 0.140%로써 急激한 累進的 負擔構造를 나타내고 있으나 第8分位階層에 있어서는 逆進的 負擔이 되어 있다. 이는 所得이 14千원~20千원인 第8分位階層의 消費支出類型이 他階層보다 현저히 다른데 그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라 部分的으로는 統計上의 誤差에 그리고 또 部分的으로는 住居用 非耐久性 消費財나 耐久性消費財에 대한 家計의 需要가 品質에 따라 一定한 限界를 갖고 있다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시멘트消費에 따른 階層別 物品稅負擔構造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第6分位階層과 第7分位階層間에 있어서는 累進的 負擔構造를 보여 주고 있으나 第7分位階層과 第8分位階層間에는 逆進的 負擔構造를 보여 주고 있고 또 家具와 같이 品質에 따라 家計의 支出額이 따라서 그 物品稅負擔額이 다른 경우에는 階層間의 負擔構造는 逆進的이나 또는 累進的 性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10) 가령 설탕에 대한 物品稅의 現行稅率은 40%이고, 커피에 대한 稅率은 50%이며, 綿糸에 대한 稅率은 10%, 시멘트에 대한 稅率은 5%로 되어 있다.

<第 6 表>

所得階層別 物品稅 負擔率(1965)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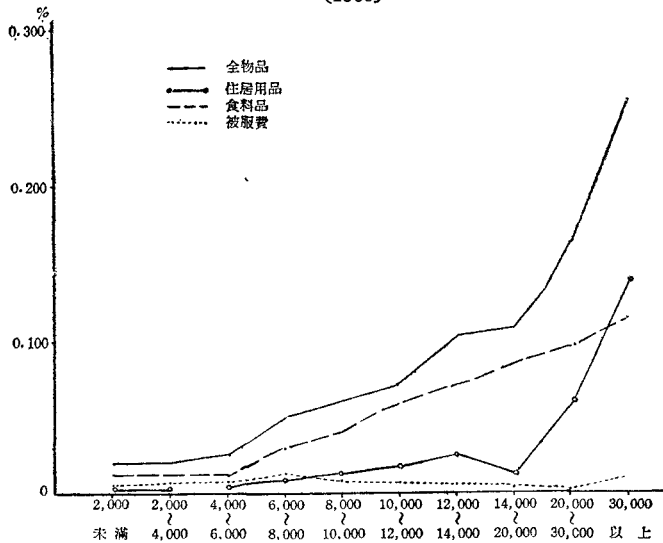
	全階層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全 物 品	0.108	0.023	0.022	0.028	0.051	0.064	0.098	0.105	0.106	0.164	0.262
(食 料 品 費)	0.071	0.013	0.013	0.013	0.033	0.041	0.062	0.070	0.086	0.098	0.112
설 탕	0.058	0.013	0.013	0.013	0.032	0.037	0.060	0.064	0.052	0.069	0.064
커피	0.012					0.003	0.002	0.004	0.034	0.029	0.045
콜라											
사 이 다	0.001				0.001	0.001	0.000	0.001			0.002
주 스								0.001			0.001
(住 居 費)	0.025	0.002		0.005	0.009	0.012	0.023	0.027	0.014	0.060	0.140
벽 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창 호 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시 덴 트	0.002	0.002		0.001	0.002	0.002	0.001	0.005	0.003	0.002	0.002
합 석	0.001				0.001	0.000	0.001	0.001		0.004	
板 유 리								0.001		0.000	0.000
合 板										0.001	0.000
양 북 장	0.018			0.004	0.003	0.010	0.019	0.018	0.008	0.047	0.077
재 봉 틀	0.001				0.001		0.000			0.006	
텔 레 비											0.060
라 디 오	0.003				0.002	0.000	0.002	0.002	0.002		
(光 熱 費)	0.001						0.002		0.001	0.002	0.001
프로판가스	0.001						0.002		0.001	0.002	0.001
(被 服 費)	0.010	0.004	0.008	0.008	0.010	0.009	0.008	0.008	0.004	0.002	0.009
廣 木	0.002			0.007	0.002	0.002	0.001	0.001	0.000	0.000	0.004
포 플 린	0.007		0.006	0.007	0.007	0.006	0.006	0.006	0.004	0.002	0.005
綿 糸	0.001	0.004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雜 費)	0.001	0.004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도 화 지							0.000	0.000	0.000	0.000	0.000
更 紙	0.001	0.00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調査資料를 再分類한 것임.

그러나 라디오와 같이 家計의 需要가 限定되어 있는 物品에 대한 支出에 따른 物品稅負擔率은 萬一 課稅對象物品의 價格이 同一하다면 分明히 逆進의 性格을 나타낼 것이지만 品質의 差異에 따라 價格 따라서 稅負擔額이 다르기 때문에 그 階層別 負擔率은 比例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그 負擔率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特定한 階層에 限하여 物品稅의 負擔이 歸着되고 있는 프로판가스를 除外하고 被服費中에 包含되어 있는 物品稅課稅物品에 대한 支出로 因한 物品稅負擔率을 보면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는 0.010%가 되어 있

〈第1圖〉 所得階層別 物品稅 負擔率
(1965)



資料：第6表에 의하여 作成함.

으며 全物品의 負擔率에 대한 그 比重은 9.3%에 達하고 있다. 또 그 階層別 負擔率을 보면 第1分位階層은 0.004%, 第10分位階層은 0.009%로서 多少의 累進性을 나타내고 있으나 第2分位階層에서 부터 第8分位階層에 이르기 까지 負擔率은 0.008%를 前後하여 變化되고 있으며 第8分位階層과 第9分位階層間에 있어서는 逆進的 負擔構造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被服費의 支出對象中에 包含되어 있는 物品稅 課稅品目이 모두 必需品이며 그稅率이 相對的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對象物品에 대한 家計의 需要는 一定한 限界를 갖고 있는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階層別 物品稅負擔率의 累進的 性格을 強化하고 있는 것은 家計支出의 費目別로 보면 食料品 및 住居用品이며 특히 前者보다 後者の 寄與度가 높다. 그 反面에 被服費 支出對象品目の 階層別 物品稅負擔率은 거의 比例的 性格을 보여 주고 있고 光熱費나 雜費支出對象品目の 負擔率은 若干의 逆進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2. 所得階層別 酒稅의 負擔

〈階層別 酒稅負擔額〉

所得階層別 酒稅負擔額을 보면 全階層平均額은 7.00 원이며, 階層別 負擔額은 第2分位階層의 0.73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15.16 원사이에 分布되어 있다. 또 階層別 酒稅負擔額을 보면 所得水準이 높아 집에 따라 酒稅負擔額도 增加되고 있으나 단지 第10分位階層

<第7表>

所得階層別 酒稅負擔額(1965)

單位: 원

所得階層別 區分	平 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家計所得	8,448	1,652	3,209	4,922	6,816	8,784	10,730	12,652	15,654	22,377	34,729
全 酒 類	7.00	—	0.73	2.10	3.70	5.93	6.22	9.05	9.54	22.68	15.16
濁 酒	0.84	—	0.23	0.61	0.69	1.15	0.77	1.23	2.15	1.99	0.08
藥 酒	1.82	—	—	0.33	0.66	1.32	0.99	1.98	1.32	6.92	6.26
燒 酒	2.78	—	0.23	1.16	2.09	2.55	3.02	4.18	3.94	8.58	1.16
清 酒	0.80	—	0.27	—	0.27	0.53	1.07	0.53	2.14	3.67	6.14
麥 酒	0.76	—	—	—	—	0.38	0.38	1.14	—	1.52	1.52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

에 있어서는 그러한 傾向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 酒稅負擔額이 減少되고 있는 것은 高所得層일수록 酒類에 대한 支出額이 相對的으로 낮은데 그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라 家計調查資料에 反映되지 않은 高級酒의 消費量이 比較的 큰 比重을 占할 수 있다는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家計가 負擔하는 酒稅額을 品種別 所得階層別로 보면 濁酒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은 全家口平均에 있어서는 0.84원이며 그 階層別 負擔額은 第2分位階層의 0.23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0.08원사이에 分布되어 있다. 즉 濁酒消費에 따른 家計의 酒稅負擔額은 第2分位階層에서 第8分位階層에 이르기까지 大體로 增加되고 있으나 第9分位階層以上の 階層에 있어서는 그 負擔額이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藥酒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은 全階層 平均에 있어서는 1.82원에 達하고 있으며 그 階層別 負擔을 보면 第3分位階層의 0.33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6.26원사이에 分布되고 있다. 그러나 그 階層別 負擔額을 자세히 보면 階層間의 變化가 매우 不規則의이며 特히 第9分位階層과 第10分位階層에서 그 負擔額이 急激히 늘어 나고 있다.

다음에 燒酒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을 보면 全階層 平均 負擔額은 2.78원에 達하고 있고 全酒類消費에 따른 全家口平均 酒稅負擔額 7.00원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階層別 負擔額을 보면 第2分位階層의 0.23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1.16원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나 第9分位階層까지는 그 負擔額이 계속 增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第9分位階層의 負擔額은 8.58원에 達하고 있다.

또 清酒의 경우에는 그 全家口 平均酒稅負擔額은 0.80원이며 그 階層別 負擔額은 第2分位階層의 0.27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6.14원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第7分位階層을 除外한 그 밖의 階層에 있어서는 그負擔額이 所得水準의 變動과 同一한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

끝으로 麥酒消費에 따른 家計의 酒稅負擔을 보면 全家口 平均 負擔額은 0.76 원이지만 階層別로 보면 그 負擔이 第5分位階層의 0.38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1.52 원 사이에 分布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品種別 酒稅負擔額을 階層別로 보면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第9分位階層까지는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濁・藥酒・燒酒의 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은 第9分位階層에 比하여 減少되고 있으나 淸酒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은 比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高所得層일수록 高級酒를 需要하는 一般的 傾向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現象은 比단 第10分位階層에 限하여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第3分位階層에 있어서는 第2分位階層에 比하여 濁酒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이 減少된 反面에 燒酒나 藥酒의 消費에 따른 酒稅負擔額이 增加되고 있고 또 第6分位階層이나 第8分位階層에 있어서는 藥濁酒보다 燒酒, 또는 燒酒보다 淸酒의 消費에 따르는 酒稅負擔額이 增加하고 있는 現象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階層別 酒稅負擔率〉

所得階層別 酒稅負擔率을 보면 全家口平均負擔率은 0.083%로써 이는 家計가 家計所得 1,000 원中 0.83 원을 酒稅로서 支拂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階層別 負擔率은 第2分位階層의 0.023%에서 第9分位階層의 0.101% 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第10分位階層의 負

〈第8表〉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率(1965)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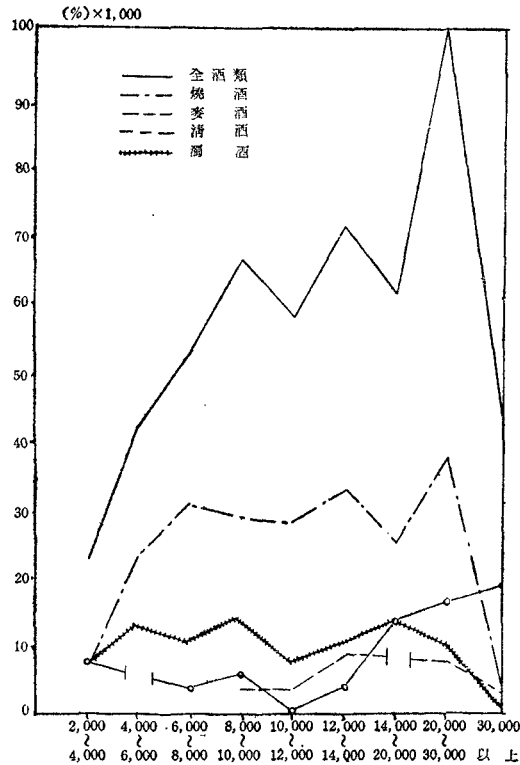
所得階層別 酒類別	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全 酒 類	0.083	—	0.023	0.043	0.054	0.067	0.058	0.072	0.061	0.101	0.044
濁 酒	0.010	—	0.007	0.012	0.010	0.013	0.007	0.010	0.014	0.009	0.002
藥 酒	0.016	—	—	0.007	0.010	0.015	0.009	0.016	0.008	0.031	0.018
燒 酒	0.033	—	0.007	0.024	0.031	0.029	0.028	0.033	0.025	0.038	0.003
淸 酒	0.009	—	0.008	—	0.004	0.006	0.010	0.004	0.014	0.016	0.018
麥 酒	0.009	—	—	—	—	0.004	0.004	0.009	—	0.007	0.004

資料：韓國經濟開發協會

擔率은 0.044%에 達하고 있다. 그리하여 家計가 負擔하는 酒稅의 負擔은 一般的으로 累進的 性格을 갖고 있으나 第6分位階層과 第8分位階層 그리고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逆進的 負擔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階層이 一般的 傾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이들 階層에 있어서 酒類에 대한 需要가 下級酒에서 高級酒로 轉換됨에 따라 酒類에 대한 家計支出이 相對的으로 抑制되는 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階層別 酒稅負擔率을 品種別로 보면 濁酒의 경우 그 負擔率은 第2分位階層의 0.007%에서 第8分位階層의 負擔率인 0.014% 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나 第9分位階層 및

〈第2圖〉 家計의 所得階層別 酒稅實効負擔率(全家口)(1965)



資料：韓國經濟開發協會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그 負擔率이 急激히 低下되고 있다. 또 그러한 逆進的 負擔構造는 第3分位階層과 第4分位階層사이에서 또는 第5分位階層과 第6分位階層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藥酒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階層別 負擔率의 變化는 不規則的이지만 대체로 累進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고 燒酒의 경우에는 第10分位階層을 除外하면 그러한 不規則的 變化의 幅은 매우 작다.

다음에 清酒의 消費에 따르는 階層別 酒稅負擔率을 보면 第7分位階層을 除外하고 보면 그 負擔構造는 累進的 性格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以上과 같이 酒稅의 階層別 負擔率이 累進的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은 物品稅의 경우와 같이 稅率表가 品種에 따라 差別課稅를 하는 構造的 特徵을 지니고 있는 데 基因하나 部分的으로는 酒類에 대한 消費者의 選好가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下級酒로부터 高級酒에 轉換되는 消費패턴의 變化에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3.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の負擔

<階層別 煙草專賣益金の負擔額>

全階層 家口當 平均 煙草專賣益金の負擔額은 207.86 원으로써 그 階層別 負擔額은 第1分位階層의 65.54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469.75 원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煙草消費稅負擔額도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製品別로 보면 그러한 一

<第9表>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 負擔額(1965)

單位: 원

所得階層別 製品別	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家計所得	8,448	1,652	3,209	4,922	6,816	8,784	10,730	12,650	15,654	22,377	34,729
全製品	207.86	65.54	100.71	122.43	149.03	188.50	204.83	251.67	321.29	344.26	469.75
신탄진	1.22	—	—	—	—	—	0.61	7.32	—	4.27	—
파코다	56.93	23.51	3.94	14.23	9.28	27.23	25.99	62.50	147.27	198.63	279.70
금관	3.66	—	—	—	2.44	1.22	0.61	6.10	3.66	3.05	15.24
아리랑	80.00	6.98	38.12	26.85	55.84	82.68	106.84	106.84	125.63	119.73	165.90
희망	1.15	—	0.57	1.72	—	4.01	1.15	—	—	—	—
백조	22.93	—	9.28	23.48	30.58	30.03	20.75	32.76	18.02	2.73	3.00
백양	7.64	—	2.18	3.28	10.37	8.19	11.47	13.10	7.64	8.74	—
진달래	16.64	9.13	12.89	19.87	22.55	20.94	16.11	12.89	14.50	3.22	5.91
금잔디	10.74	8.59	12.35	19.33	10.74	9.66	17.72	4.83	3.22	3.22	—
파랑새	7.07	17.51	21.55	13.81	7.41	4.71	3.70	5.39	1.35	0.67	—
풍년초	-0.12	-0.18	-0.18	-0.12	-0.18	-0.18	-0.12	-0.06	—	—	—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

般的 傾向과 步調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高級煙草의 消費에 따른 負擔額이며 下級煙草의 경우에는 一定한 所得階層부터는 當該 煙草의 消費로 인한 煙草消費稅負擔額은 減少되고 있다. 이를테면 「파코다」나 「아리랑」의 경우가 前者에 해당하고 「진달래」「금잔디」「파랑새」의 경우가 後者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所得水準이 높아질수록 階層別 煙草消費稅의 負擔이 增加하고 있는 것은 주로 煙草에 대한 家計의 支出類型, 이를테면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下級煙草보다 高級煙草를 選好하는 消費者의 行動에 基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最下級煙草인 「풍년초」에 대해서는 國庫補助가 行하여 지고 있으며 全家口 平均補助額은 0.12 원에 達하고 있으나 그 階層別 交付額을 보면 第1分位階層의 0.18 원에서 第7分位階層의 0.06 원사이에 分布되어 있다. 그러나 下級煙草消費에 따르는 煙草消費稅負擔額이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減少되고 있는 것과 같이 「풍년초」의 경우에는 그 補助額이 減少되고 있다.

<階層別 煙草專賣益金の負擔率>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の負擔率을 보면 全家口 平均 負擔率은 2.460%이며 이는 家計가 家計所得 1,000 원中 24.60 원을 煙草消費稅로서 負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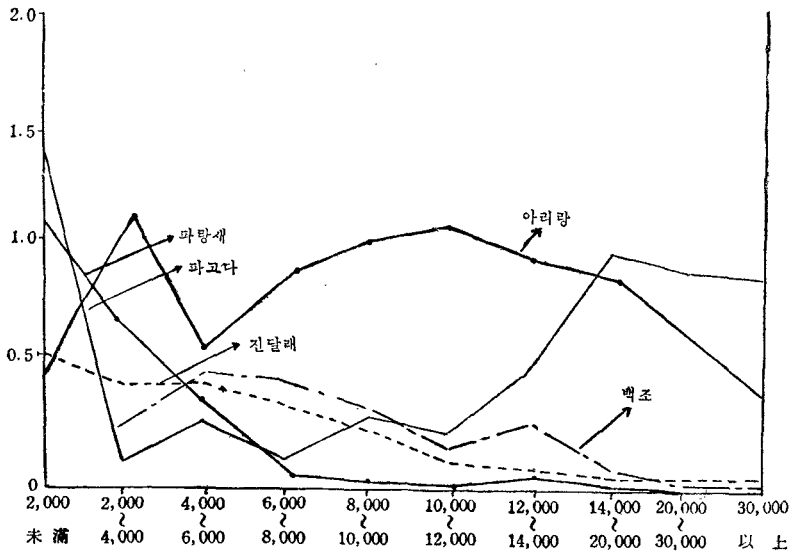
<第 10 表>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 負擔率(1965)

單位 : %

所得階層別 製品別	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全製品	2.460	3.967	3.138	2.487	2.186	2.146	1.909	1.989	2.052	1.538	1.353
신탄진	0.014	—	—	—	—	—	0.006	0.058	—	0.019	—
파고다	0.674	1.423	0.123	0.289	0.136	0.310	0.242	0.494	0.941	0.888	0.805
금관	0.043	—	—	—	0.036	0.014	0.006	0.048	0.023	0.014	0.044
아리랑	0.947	0.423	1.188	0.545	0.819	0.941	0.996	0.844	0.803	0.535	0.478
희망	0.014	—	0.018	0.035	—	0.046	0.011	—	—	—	—
백조	0.271	—	0.289	0.477	0.449	0.342	0.193	0.259	0.115	0.012	0.009
백양	0.090	—	0.068	0.067	0.152	0.093	0.107	0.104	0.049	0.039	—
진달래	0.197	0.552	0.402	0.404	0.331	0.238	0.150	0.102	0.093	0.014	0.017
금잔디	0.127	0.520	0.385	0.393	0.158	0.110	0.165	0.038	0.020	0.014	—
파랑새	0.084	1.060	0.672	0.280	0.109	0.054	0.035	0.043	0.009	0.003	—
풍년초	-0.001	-0.011	-0.006	-0.002	-0.003	-0.002	-0.001	-0.001	—	—	—

<第 3 圖> 所得階層別 煙草專賣益金 實効負擔率(全家口)(1965)



資料 :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資料를 修正한 것임.

또 그 階層別 負擔率은 第1分位階層의 3.967%에서 第10分位階層의 1.353%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그 負擔構造는 逆進的 性格을 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製品別로 보면 高級煙草일수록 그 負擔率은 階層間에 있어서 不規則的인 變化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는 煙草가 嗜好品이고 또 所得水準이 上昇됨에 따라 高級煙草를 選好하는 消費類型이나 煙草의 需要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는 事實등에서 說明될 수 있는 일이다. 그 反面에 下級煙草일수록 階層間 負擔率의 不規則的인 變化는 그 幅이 작으며 그 負擔에 있어서 逆進的 性格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IV. 內國消費稅의 負擔水準

이제 위에서 考察한 家計가 負擔하고 있는 物品稅 酒稅 및 煙草專賣益金の 總合的인 負擔을 所得階層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總體的 負擔額과 稅種의 構成

石油類稅를 除外한 物品稅 酒稅 및 煙草專賣益金등 內國消費稅의 總合的 負擔을 所得階層別로 보면 全家口 平均負擔額은 224 원이며 그 階層別 負擔額은 第1分位階層의 65.91 원에서 第10分位階層의 575.76 원사이에 分布되어 있다.

〈第11表〉 家計調査資料에 의한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負擔(1965) 單位: 원

所得階層別 區分	平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家計所得	8,448	1,652	3,209	4,922	6,816	8,784	10,730	12,652	15,654	22,377	34,729
物品稅	(4.1)	(0.6)	(0.7)	(1.0)	(2.2)	(2.8)	(4.7)	(4.8)	(4.8)	(9.1)	(15.8)
酒稅	(3.1)	(—)	(0.7)	(1.7)	(2.4)	(3.0)	(2.8)	(3.3)	(2.7)	(5.6)	(2.6)
煙草專賣益金	(92.8)	(99.4)	(98.6)	(97.3)	(95.4)	(94.2)	(92.5)	(91.9)	(92.5)	(85.3)	(81.6)
內國消費稅	224	65.91	102.14	125.89	156.18	200.02	221.53	273.97	347.37	403.73	575.76
直接稅	252	7	13	61	156	294	358	464	599	766	1,692
稅組	476	72.91	115.14	186.89	312.18	494.02	579.53	737.97	946.37	1,169.73	2,267.76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資料를 再分類한 것임.

註: (1) 所得稅, 家屋稅, 相續稅등의 直接稅外에 洞會費, 赤十字社會費, 夜警費등의 公課金を 包含.

(2) 括弧內數字는 內國消費稅(石油類稅 除外)를 100으로 볼 경우의 各稅目的 構成比.

이를 稅種에 따라 보면 全家口 平均負擔額의 4.1%는 物品稅가 그 3.1%는 酒稅가 그리고 그 92.8%는 煙草專賣益金이 各各 차지하고 있으며 家計가 負擔하는 內國消費稅中 煙草專賣益金の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이를 階層別로 보면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內國消費稅의 負擔額도 增加되고 있으나 그 稅種別 構成에 있어서 物品稅의 比重이 第1分位階層의 0.6%에서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15.8%로 上昇되고 있으며 그 上昇率은 酒稅의 경우보다 높다. 이에 反하여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 負擔額中 煙草專賣益金이 占하는 比重은 第1分位階層의 99.4%에서 第10分位階層에 있어서는 81.6%로 低下되고 있다.

이와 같이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라 階層別 物品稅 또는 酒稅負擔額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租稅의 負擔이 累進的 또는 比例的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相對的 比重이 低下되고 있는 煙草專賣益金の 경우는 그에 相反되는 傾向을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

2.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의 總體的 負擔率

다음에 家計가 負擔하는 物品稅 酒稅 및 煙草專賣益金の 總合的 負擔率을 所得階層別로 보면 全家口 平均負擔率은 2.651%로서 이는 家計所得 1,000 원中 26.51 원이 內國消費稅로써 支拂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 階層別 負擔率은 第1分位階層의 3.990%에서 第10

<第12表>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 負擔率(1965)

單位: %

所得階層別 區分	平 均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物 品 稅	0.108	0.023	0.022	0.028	0.051	0.064	0.098	0.105	0.106	0.164	0.262
酒 稅	0.083	—	0.023	0.043	0.054	0.067	0.058	0.072	0.061	0.101	0.044
煙草專賣益金	2.460	3.967	3.138	2.487	2.186	2.146	1.909	1.989	2.052	1.538	1.353
內國消費稅	2.651	3.990	3.183	2.558	2.291	2.277	2.065	2.166	2.219	1.803	1.659
直 接 稅	2.983	0.424	0.405	1.239	2.289	3.347	3.336	3.667	3.826	3.423	4.872
租稅負擔率	5.634	4.414	3.588	3.797	4.580	5.624	5.401	5.833	6.046	5.227	6.530

資料: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資料를 再分類한 것임.

註: (1) 所得稅, 家屋稅, 相續稅 其他 公課金을 包含하는 直接稅와 石油類를 除外한 內國消費稅에 對한 家計의 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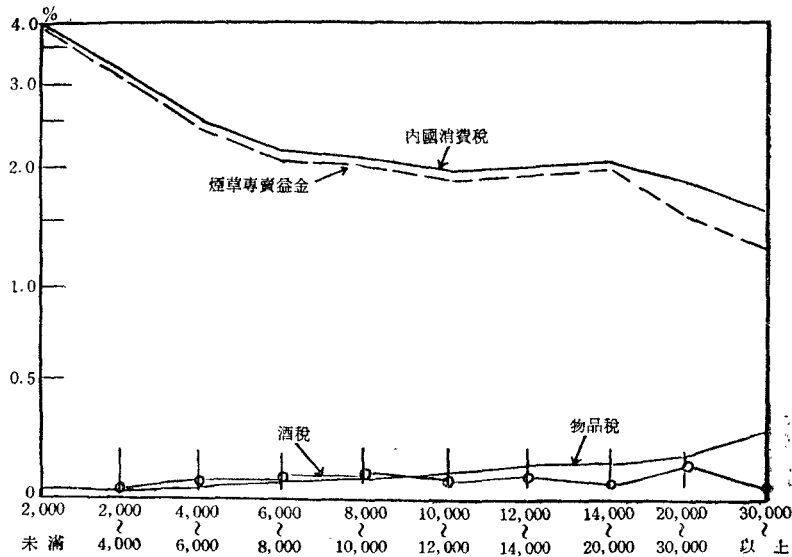
分位階層의 1.659% 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며 階層間에 있어서 그 負擔率의 變化는 不規則的인지는 하나 全般的으로 보면 그 負擔構造가 緩慢한 逆進的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稅種別로 보면 物品別 또는 品種別로 差別的인 稅率이 適用되고 있는 物品稅나 酒稅의 階層別 負擔構造는 累進的 또는 比例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그 反面에 煙草專賣益金の 階層別 負擔構造는 緩慢한 逆進的 傾向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로 因하여 石油類稅를 除外한 內國消費稅全體의 負擔은 逆進的인 性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家計가 負擔하는 內國消費稅와 所得稅등 直接稅의 負擔을 比較하여 보면 全家口 平均에 있어서 內國消費稅(石油類稅 除外)보다 直接稅의 負擔率이 높다. 물론 이러한 것이 間接稅全體로서의 負擔率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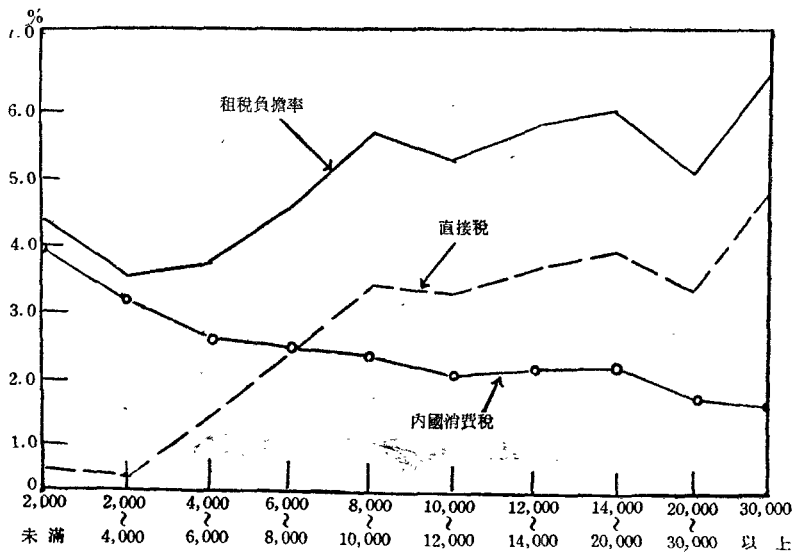
또 內國消費稅와 直接稅의 階層別 負擔率을 比較하여 보면 後者는 第2分位階層과 第4

〈第4圖〉 家計(全家口)의 所得階層別 內國消費稅 實効負擔率(1965)



資料：韓國經濟開發協會

〈第5圖〉 所得階層別 直接稅 및 內國消費稅 實効負擔率



資料：韓國經濟開發協會。

分位階層間에 또 第9分位階層以上の 階層에 있어서 累進性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고 第6分位階層과 第8分位階層間에 있어서는 緩慢한 累進性을 보여 주고 있으며 前者는全體로

서 緩慢한 逆進性을 나타내고 있으나 第6分位階層과 第8分位階層間에 있어서는 若干의 累進의 性格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石油類稅를 除外한 國內消費稅와 直接稅의 總體的 負擔은 第2分位階層까지에는 逆進의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第2分位階層과 第6分位階層間에 있어서는 內國消費稅의 逆進의 負擔構造로 因하여 直接稅의 累進의 性格은 多少 緩和되고 있으나 第6分位階層과 第8分位階層間의 總體的 負擔에 있어서는 內國消費稅의 累進의 性格이 直接稅의 累進의 負擔으로 因한 總體的 租稅負擔의 累進性을 強化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주로 所得彈力性이 높은 奢侈性 消費財에 差別的 稅率이 適用되고 있는 物品稅의 負擔이나 또 品種에 따라 差別課稅되고 있는 酒稅의 負擔은 그 累進의이나 또는 比例의인 性格으로 因하여 內國消費稅의 負擔全體에 緩慢한 逆進性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直接稅의 累進의 性格을 補完하여 總體的 租稅負擔의 累進度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外國의 事例

「머스그레이브」報告書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 “物品種類別로 그 稅率을 달리한다면 物品稅制度는 不公平하지 않을 것이며” 또 “半奢侈品보다 奢侈品에 高稅率을 適用하고 國產品은 勿論 輸入品도 課稅品目에 包含하는 廣範한 物品稅制度의 擴張…은 租稅構造의 公平性을 弱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強化시킬 것”⁽¹¹⁾이라는 見解는 위에서 確認된 事實과 符合되고 있다. 이를테면 物品稅를 包含한 우리나라의 內國消費稅의 負擔이 煙草消費稅의 逆進의 負擔構造를 緩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部分的이나마 總體的 租稅負擔의 累進性을 強化하고 있는 事實이 그러한 見解를 正當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確認된 事實은 一定한 制約條件下에서 그 妥當性을 主張할 수 있는 것에 不過하지만 階層別 支出패턴이나 課稅對象 또는 稅率構造의 差異에 따라 消費稅負擔의 逆進度를 緩和시키거나 또는 消費稅의 負擔에 累進의 性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普遍화된 見解이며 先進國은 말할 나위도 없고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이미 統計의으로 實證되고 있는 事實이다.⁽¹²⁾

이제 그러한 事例를 「필리핀」과 日本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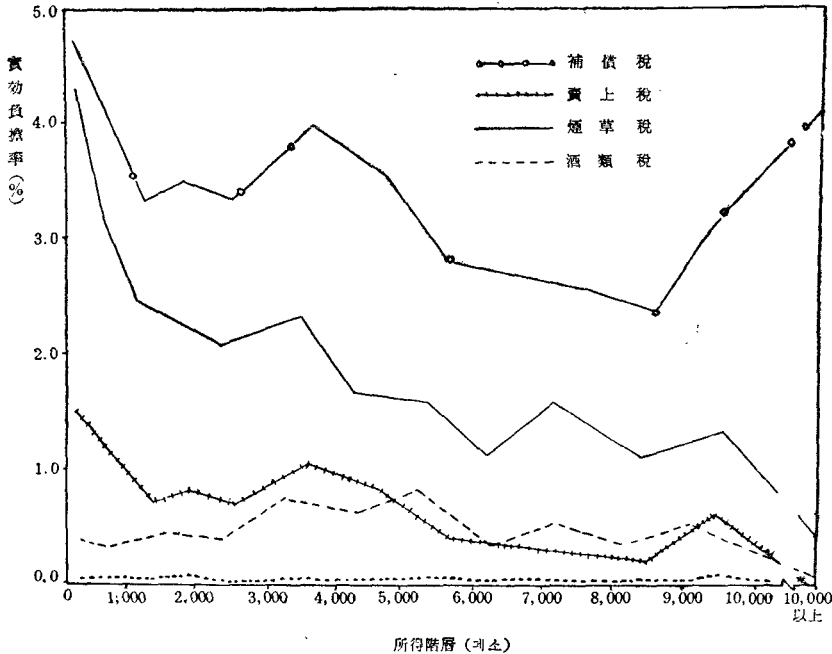
먼저 「필리핀」의 例(1960年度)를 보면⁽¹³⁾ 煙草消費稅의 階層別 負擔은 年間 所得이 3千 페소인 階層까지는 急激한 逆進性을 나타내고 있으나 所得이 9千~10千페소인 階層까지는 그 負擔이 逆進의 傾向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逆進度가 相當히 緩和되고 있다.

(11) 財務部司稅局, 上揭書, p. 32.

(12) Cf. J. H. Adler, “Fiscal Policy in a Developing Country,” pp. 302—03.

(13) Tax Commission, Philippines, op. cit., pp. 34—6, pp. 42—44, pp. 46—8.

〈第 6 圖〉 「필리핀」의 主要課稅物品에 對한 所得階層別 稅負擔率



資料 : A Joint Legislative-Executive Tax Commission, *Study of Tax Burden by Income Class in the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1964, p. 36.

그러나 所得이 10千 페소 以上인 階層에 있어서는 그 負擔이 다시금 急激한 逆進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全階層에 있어서의 煙草消費稅의 負擔은 그 逆進性이 매우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反하여 酒稅의 負擔率은 그 所得이 5千~6千페소인 階層까지는 緩慢한 累進性을 나타내고 있고, 所得이 6千~10千페소인 階層에 걸쳐서는 그 負擔이 거의 比例的으로 되어 있으며, 所得이 10千페소 以上인 階層에 있어서는 그 負擔이 다시금 逆進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輸入되거나 國內에서 生産되는 財貨에 대하여 課稅하고 있는 賣上稅의 負擔은 總體的으로는 逆進性을 나타내고 있으나 所得이 1.5千~2千페소인 階層, 所得이 2.5千~3.5千페소인 階層 그리고 所得이 8.5千~9.5千페소인 階層에 있어서는 그 負擔이 累進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所得이 5.5千~8.5千페소인 階層間에 있어서 그 負擔은 극히 緩慢한 逆進性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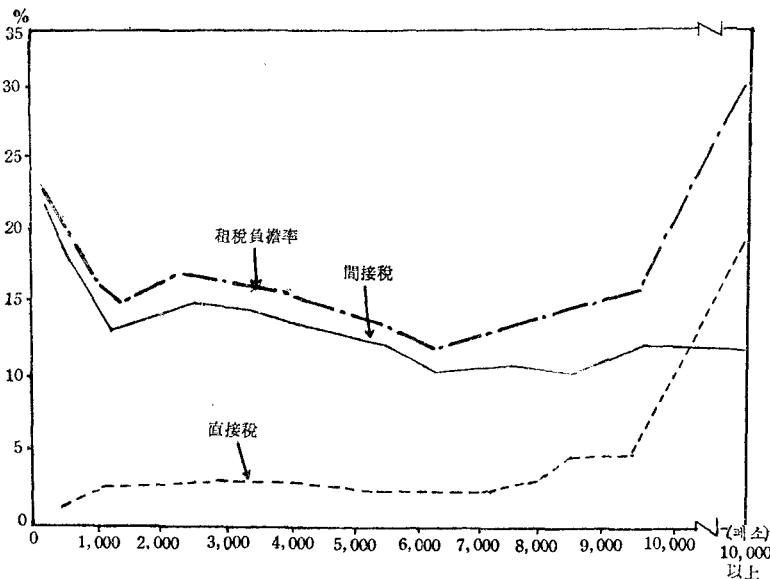
이와 같이 酒稅나 賣上稅의 負擔이 累進의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은 酒類에 대한 課稅에 있어서는 種目別로 그리고 賣上稅는 奢侈品 準奢侈品 그리고 日用品으로 區分하여 各

各 差別稅率이 適用되는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¹⁴⁾

그밖에 生産 및 賣上에 課하여 지는 租稅中에는 國內에서 輸入者가 直接 消費 또는 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非販賣用 財貨에 대하여 課하는 補償稅(Compensation Tax)가 있다. 이 租稅는 輸入物品에 課하는 賣上稅와 같이 奢侈品, 準奢侈品 그리고 日用品의 區分에 따라 各其 100%, 50%, 25%의 稅率이 適用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差別的 稅率이 適用되는 까닭에 그 負擔은 階層에 따라 累進的 性格을 갖게 된다. 즉 所得이 1.5千~2千페소인 階層이나 所得이 2.5千~3.5千페소인 階層 또는 所得이 8.5千페소 以上인 階層에 있어서 補償稅의 負擔은 各各 急激한 累進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필리핀」의 直接稅(所得 및 財産稅)와 間接稅(生産 및 賣上에 대한 課稅) 負擔을 比較하여 보면 相當히 넓은 階層에 걸쳐 直接稅의 負擔은 緩慢한 累進 또는 比例的인 性格을 나타내고 있고 또 間接稅의 負擔도 1.5千페소 以上 階層에 걸쳐 全般的으로 緩慢한 逆進的 性格을 보여 주고 있으나 所得이 1.5千~2.5千페소인 階層 또는 所得이

〈第 7 圖〉 「필리핀」의 租稅負擔率(所得에 對한 百分比)(1960)



資料 : Joint Legislative-Executive Tax Commission, *A Study of Tax Burden by Income Class in the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1964, p. 36

(14) 1964年 現在 寶石 香水 自動車 등 奢侈品에 대한 賣上稅의 稅率은 50%이며, 樂器, 성냥 家庭用 電氣機具(冷蔵庫 除外) 등 準奢侈品에 대한 稅率은 30%이다. 그밖의 物品에 대해서는 7%의 稅率이 適用된다.

6.5千~7.5千페소인 階層 그리고 所得이 8.5千~9.5千페소인 階層에 있어서는 間接稅의 負擔이 累進性を 갖고 있기 때문에 當該 階層의 總體의 租稅負擔의 累進性は 強化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日本의 事例(1962年度)⁽¹⁵⁾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煙草專賣益金 및 煙草消費稅의 逆進性이 가장 強하고 酒稅나 砂糖消費稅의 負擔은 全般的으로 完滿한 逆進的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物品稅의 경우 그 階層別 負擔은 所得이 10千~20千원인 階層에 있어서는 逆進性を 갖고 있으나 所得이 20千원以上인 階層에서 所得이 90千원인 階層까지는 累進的 또는 比例的 性格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奢侈性이 높은 商品에는 重課하는 課稅原則을 채택하고 있는데 基因하고 있다.⁽¹⁶⁾

<第 13 表>

家計調査資料에 의한 所得階層別 間接稅負擔(1962)
(全國都市勤勞者世帯)

單位 : %

實 收 入(圓)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酒 稅	1.35	0.85	0.68	0.59	0.53	0.49	0.46	0.43	0.41	0.39
煙草專賣益金	2.21	1.12	0.76	0.57	0.46	0.39	0.34	0.30	0.27	0.24
砂糖消費稅	0.43	0.26	0.20	0.17	0.15	0.14	0.31	0.12	0.11	0.11
物 品 稅	0.25	0.18	0.20	0.22	0.23	0.24	0.24	0.24	0.24	0.23
入 場 稅	0.06	0.04	0.03	0.02	0.02	0.02	0.02	0.01	0.01	0.01
電 氣 加 價 稅	0.48	0.31	0.24	0.21	0.19	0.18	0.17	0.16	0.15	0.14
其 他 間 接 稅	0.11	0.09	0.07	0.07	0.06	0.06	0.06	0.06	0.05	0.05
小 計	4.89	2.83	2.17	1.86	1.65	1.51	1.40	1.32	1.24	1.18
所 得 稅	0.04	0.24	0.55	1.08	1.72	2.25	2.94	3.64	4.12	4.65
住 居 稅	0.16	0.35	0.63	0.91	1.16	1.38	1.50	1.69	1.78	1.75
小 計	0.20	0.59	1.18	1.99	2.88	3.63	4.44	5.33	5.90	6.40
合 計	5.09	3.41	3.35	3.84	4.54	5.14	5.85	6.64	7.14	7.58

資料 : 稅制調査會『基本的 稅制에 對한 答申』, 1964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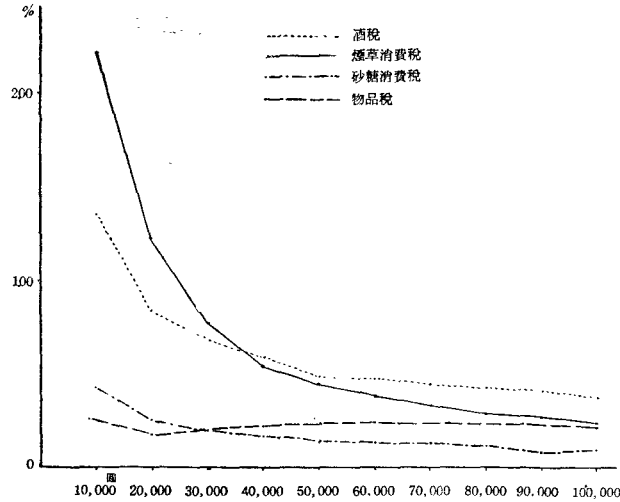
끝으로 家計調査資料를 基礎로 하여 計測한 直接稅와 間接稅의 負擔을 살펴보면 所得稅와 住居稅를 合한 直接稅의 負擔은 所得이 10千圓 以下인 階層에 있어서는 0.2%가 되어 있고 所得이 100千圓인 階層에 있어서는 6.4%가 되어 있으며 全階層을 通한 負擔構造는 累進性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間接稅의 負擔에 있어서는 煙草消費稅나 酒稅가 所得이 50千圓以下인 階層에 있어서는 強한 逆進性を 나타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物品稅나 砂糖消費稅의 負擔이 극히

(15) 稅制調査會『昭和 39年 12月 答申』p. 192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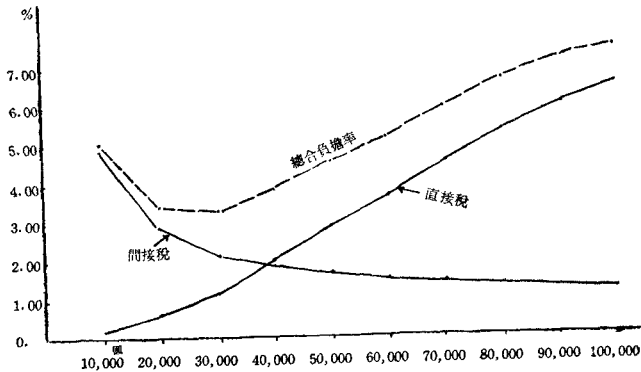
(16) 텔레비 電氣冷蔵庫, 小型乘用車등에 대해서는 製造者販賣價格의 20%, 奢侈性이 높은 高級乘用自動車 摩托用具등에는 40%, 實用性이 높은 時計 嗜好飲料品등에는 10%, 化粧크림에는 5%의 稅率이 各各 適用되고 있다.

〈第8圖〉 日本의 主要間接稅의 所得階層別 負擔率 (1962年度)



資料：日本稅制調查會資料에 따라 作成함.

〈第9圖〉 日本의 勤勞者世帶 所得階層別稅負擔率 (1962年度)



資料：日本稅制調查會 資料에 따라 作成한 것임.

완전한 逆進的 性格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入場稅나 電氣가스稅 및 其他 間接稅(揮發油稅, 地方道路稅, 輕油取引稅 및 트램프稅等)의 負擔이 넓은 階層에 걸쳐 거의 比例的 이 되어 있기 때문에 間接稅全體의 負擔構造는 相當히 完滿한 逆進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日本에 있어서와 같이 直接稅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所得分配를 修正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利用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間接稅의 完滿한 逆進性은 直接稅의 急激한 累進性을 緩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結 語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나 「필리핀」 또는 日本의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에 있어서 共通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內國消費稅中 煙草消費稅의 負擔額이 餘他の 間接稅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그 階層別 負擔에 있어서 逆進性이 強하다는 것이다. 이는 煙草價格이 獨占利潤을 包含하고 있는데 비롯된 現象이라 하겠다. 둘째 酒稅의 負擔은 逆進的인기는 하나 相當히 넓은 階層에 걸쳐 그 負擔이 比例의이거나 또는 累進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所得對象의 범위와 稅率이 政策的으로 決定되는 우리나라의 物品稅나 日本의 物品稅 그리고 「필리핀」의 賣上稅나 補償稅는 累進의 性格이나 比例의 性格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 負擔이 逆進性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程度가 극히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酒稅 物品稅 또는 賣上稅등의 負擔構造는 直接稅의 累進的 負擔構造를 強化하기도 하고 또 緩和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租稅政策의 基本目標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最大限의 稅收를 確保하는데 있지만 그러한 目標達成이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을 抑制하거나 또는 分配上의 不公平을 加増시킨다면 社會的 利益보다 社會的 費用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最大限의 稅收를 確保하는 일은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을 刺戟하고 또 分配上의 公平을 改善하는 일과 同時에 進行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間接稅의 負擔面에 나타난 特徵은 그러한 租稅政策의 課題를 解決하는데 有用한 方法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Summary>

Tax Burden of Indirect Taxation in Korea

*Byung-Kwon Cha**

Indeed, for a development country it is believed to be a positive advantage to use the means of indirect taxation more extensively, for raising more revenue. There is, however, a wide spread opinion that more extensive use of indirect taxes would increase inequity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nature of indirect taxes.

Dr. Musgrave, however, denied such a viewpoint in his recommendation to Korean government, prepared for exploring "Revenue Policy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1965, claiming that the extension of commodity taxation should strengthen rather than weaken the equity of the tax structure.

In this paper, it is undertaken to examine whether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is regressive or progressive, with respect to commodity taxes, liquor taxes and cigarette taxes (monopoly profit) levied in Korea, so as to prove or disprove the proposition of Dr. Musgrave.

I. Assumptions and Method

Assump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 approach in computing tax burdens by income classes, the family budget data are used under the following assumptions: first,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is fully shifted to final consumers; second,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levied on the specific taxable goods is proportional to the sum of family expenditure on the said goods; third, consumer does not change his consumption behavior on account of tax burden, nor he is influenced by the money illusion.

Besides, the computation of the tax burden in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 The author is associate professor of public finance,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trictions in relation to the data used and the result obtained.

First, the computation of the tax burden was limited only three internal consumption taxes such as the commodity tax, the liquor tax and the cigarette tax, which was estimated from the monopoly profit, collected and acquired in FY 1965.

Second, the family budget data used in computing the tax burden are identical with those collected regularly by the Research and Statistics Bureau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EPB) from 1,720 sample households in 30 cities. Therefore, the tax burden computed represents that of urban area only. The EPB family budget data of the highest income class of a monthly average income of ₩14,000, however, are re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of which the highest one is the income class of more than ₩30,000.

Third, In computing the tax burden the family expenditure of the fourth quarter of FY 1965 was extended to the whole years on account of limitation of data. The result computed, therefore, has the upward bias owing to the seasonal changes.

Metho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oney burden of selected taxes by the family are proportional to the family expenditure for the taxed goods, the money burden of the specific taxes by income class was computed from the data of family expenditure on each tax item. However, in computing the amount of tax paid by families the sale margin of 25%, which was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wa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expenditure on each tax item. In case of liquor tax, however, the sale margin of 11%—12% was used, and in the case of cigarette tax, 9%. It is, therefore, inevitable to rule out the downward or upward bias of computed tax burden on account of the difference of sale margin on each taxable item.

II. Pattern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in 1965

In 1965 urban wage earner households earned ₩8,448 in a month on the average by whole income classes. It, however, ranges from ₩1,652 on income class below ₩2,000 to ₩34,729 on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On the other hand, average family expenditure of the urban wage earner household reached ₩8,626 in a month by whole families of wage earner,

and it ranges from ¥2,010 on income class below ¥2,000 to ¥33,309 on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So far a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wage earner's household concerned, the size of expenditure is smaller than the total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general, it exceeds the level of income in the wide range of income class from the income class below ¥20,000 up to the income class ¥8,000—¥10,000.

Consumption expenditure on taxable goods

In average all households spent ¥492 for acquiring the taxable goods levied the commodity tax, liquor tax and the cigarette tax in 1965. The amount of family spending on the said taxable goods ranges from ¥146 on the income class below ¥2,000 to ¥1,491 on the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And the ratio of spending for the taxable goods to consumption expenditure varies from 7.34% on the income class below ¥2,000 to 4.71% on the highest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though that of all households reaches 5.90% on the average.

Consumption expenditure by taxable goods

It is noteworthy that the ratio of family spending on the whole taxable goods to consumption expenditure of all households declines as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rises, but it is due to family spending on cigarettes. Among the family spending on the taxable goods, those on the specific commodity subject to the commodity tax and on liquor increase as the income level rises, but their ratio to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 too.

For instance, the average amount of family spending on the taxable goods subject to the commodity tax, which consist of 22 items in the family expenditure, is ¥77 by income class of all households. And it ranges from ¥7 on the income class below ¥2,000 to ¥540 on the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Its ratio to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however, ranges 0.35%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1.70% on the highest income class, though its average of all households is 0.92%.

In case of the liquor, the same tendency is also observed: the average family spending on liquor amounts ¥34 on all households, and its ratio to the family consumption spending reaches 0.40%. By income class, however, the amount of spending ranges from ¥5 on the income class ¥2,000—¥4,000 to ¥99 on the income class more than ¥30,000, and its ratio to the family consumption spending rises from 0.15% on the second lowest income class to 0.31% on the highest income class.

With respect to the family spending on cigarette the opposite pattern is shown; the average family spending on cigarette amounts ₩ 381, and its ratio to the family consumption spending reaches to 4.57%. By income class the ratio of spending on cigarette to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declines from 6.98%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2.69% on the highest income class, even though the amount of family spending on cigarette rises from ₩ 139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 852 on the highest income class.

Thus, it is observed tha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family expenditure on taxable goods subject to the commodity tax and the liquor tax rises as the family income increases, but in the case of cigarette, the general trend is opposite.

These tendencies are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family expenditure on taxable goods subject to the commodity tax includes such expenditures on luxury or semi-luxury items as TV set, coffee, wardrobe, sugar, sewing machine and so on, and in case of liquor the high grade goods are consumed as the income level rises.

Even though the high class cigarettes are usually consumed by the higher income classes, it does not increase the family expenditure in proportion to the income level, because quantity consumed does not change so much in all households.

III. Burden of Selected Indirect Taxes by Income Class

In Korea the commodity tax, liquor tax and monopoly profit from cigarette are imposed on every unit produced as it is removed from the factory or customs custody in case of imported.

Since these taxes are levied on the quantity of the taxed commodities, the households tax burden will vary directly with the households consumption of these items. Therefore, the tax burden of the households of various income classes will follow the pattern of consumption of the commodities subject to taxation.

Commodity tax

The Commodity tax is imposed on approximately 600 items under 46 categories, but in the expenditure of family budget survey only 22 items are included.

Average money burden of commodity tax for all households is ₩ 9.14. The average money burden among family households of different income classes

rises as income increases. From ₩0.37 on the lowest income class, the money burden goes up to ₩90.85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y commodities, the money burden of commodity tax on luxury items is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the semi-luxury or necessities. For instance, the money burden of commodity tax on sugar ranges ₩0.21 on the income class below ₩2,000 to ₩22.07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ut the money burden of commodity tax on cotton yarn ranges from ₩0.07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0.14 on the highest income class.

As a percentage of gross income, the burden of commodity tax shows a progressive trend. On the average, it is 0.108%, but it rises from 0.023% on the lowest income class up to 0.262%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y commodities, a progressive trend is more clear in the case of luxury goods such as sugar, coffee, wardrobe and so on. However, in the case of semi-luxury goods or necessities, the effective rate of burden is almost proportional or slightly progressive to income.

These a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most of luxury goods has high income elasticity and quantity of demand for necessities is almost the same in the all households. Besides, a progressive trend of burden is due to, in part, the rate structure of commodity tax, which discriminates luxury from necessities. For instance, the tax rate on luxury ranges from 40% to 60%, but in the case of necessities it ranges from 2% to 10%.

Liquor tax

The liquor tax is imposed on locally produced or imported liquor when it ships out of the brewery or custom custody. It is a specific tax, too, in Korea.

The average money burden of the liquor tax is ₩7.00 ranging from ₩0.73 on the income class ₩2,000—₩4,000 to ₩15.16 on the highest income clas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oney burden of liquor tax on higher grade liquor is increasing as income rises, and in turn, that of the money burden of liquor tax on lower grade of liquor is decreasing.

For instance, the money burden of liquor tax on rice wine (raw) ranges from ₩0.23 on the income class ₩2,000—₩4,000 to ₩0.08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ut that of liquor tax on rice wine (refined) ranges from ₩0.33 on the income class ₩4,000—₩6,000 to ₩6.26 on the highest income class. At the same time the identical trends are found in the case of distilled spirits rice wine, the best class, and the beer.

On the average, the effective rate of liquor tax burden of all households is

0.083%, ranging from 0.023% on the income class ₩ 2,000—₩ 4,000 to 0.044%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y type of liquor, a progressive trend of burden is observed in the case of rice wine, refined or best class. In the case of beer, an erratic change is observed in the highest income class. It is, however,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higher income classes tend to consume an identified imported liquor.

On the whole, it is observed that the lowest income class is excluded from the burden of liquor tax and even the income class ₩ 2,000—₩ 4,000 or ₩ 4,000—₩ 6,000 do not bear the burden of liquor tax in part. It shows that consumption pattern of liquor almost runs parallel with income level.

Cigarette consumption tax (monopoly profit from cigarette)

In Korea no specific tax on cigarette is levied, but monopoly profit on manufacturing cigarette is included into the sale price of cigarette, substituting for indirect tax.

Average money burden of monopoly profit from cigarettes for all income class is ₩ 207.86, ranging from ₩ 65.54 on the lowest income class and ₩ 469.75 on the highest income class. As the case of liquor, the relative importance of tax burden due to the best quality of brand is increasing as the income rises.

For instance, the money burden of monopoly profit from the best quality of cigarettes, such as Sintanjin, Pagoda and Arirang increase sharply among the different income classes. The money burden of monopoly profit from the lower grade of cigarettes, such as Baekjo and Jindallae decrease as the income level rises. Particularly, these trends are clear in the case of Arirang and Parangsae.

The average effective rate of cigarette consumption tax is 2.460% for all income classes, ranging 3.967%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1.353% on the highest income class. In contrast to the effective rate of commodity tax or liquor tax burden, the burden of monopoly profits as a percentage of family income shows a sharp regressive tendency. By the brand of cigarettes the regressive tendency is strengthened in the lower class of cigarette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Parangsae, the effective rate of monopoly profit by income classes ranges from 1.060%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0.003% on the income class ₩ 20,000—₩ 30,000, but in the case of Pagoda, one of the best brand, its effective rate of burden ranges from 1.423%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0.805% on the highest income class. Thus, its regressiveness is lessened in

case of the higher class of cigarettes.

IV. Burden of Indirect Taxes and Direct Taxes by Income Class

Average money burden of selected consumption taxes, such as the commodity tax, the liquor tax and the cigarette tax, of all income classes amounts to ₩ 224, ranging ₩ 65.91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 575.76 on the highest income class. By tax, the average burden of cigarette tax occupies 92.8% of all money burden of the said taxes, for all households, ranging 99.4% on the lowest income class and to 81.6% on the highest income class.

It is, however, noteworthy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money burden of the commodity tax and the liquor tax is increasing as the income level rises.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money burden of direct tax, which is borne to households, such as income tax, property tax, inheritance tax, and public charges is ₩ 252 for all income classes, ranging from ₩ 7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 1,692 on the highest income class.

The average effective rate of selected indirect tax burden of all households is 2.651%, ranging from 3.990%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1.659% on the highest income class. Thus, its over-all burden is regressive among different income classes. But the average effective rate of direct tax burden of all income classes is 2.983%, ranging from 0.424% on the lowest income class to 4.872% on the highest income class.

It is, therefore, observed that the progressivity of direct tax burden of households is less pronounced, even the overall tax burden borne to households is progressive.

Furthermore, the progressive or proportional nature of the commodity tax burden and that of the liquor tax burden to some wide range of income classes not only lessens the heavy regressive nature of the cigarette tax burden, but also strengthens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n the higher income classes.

Thus, it is clear that the features of indirect tax burden in Korea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foreign patterns and at the same time the indirect taxation, except the cigarette tax, contributes to strengthen the equity of the tax structure.